



대 구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 2026고단100924

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알선등),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광고)

피 고 인 1. A

2. B

검 사 이진순(기소), 김민희(공판)

변 호 인 변호사 안진학 (피고인 모두를 위하여)

판 결 선 고 2026. 8. 27.

주 문

[피고인 A]

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

피고인으로부터 600만 원을 추징한다.

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[피고인 B]

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.

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압수된 증 제1호 및 제2호를 몰수한다.

이 유

범 죄 사 실

피고인들은 대구 남구 C건물, 2층에서 'D'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들이다.

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.

피고인들은 2025. 5.경부터 2025. 7.경까지 대구 남구 C건물, 2층을 성매매 장소로 임차하고, E 등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고, 성매매 홍보 인터넷 사이트인 'F(인터넷주소 1 생략)'에 업소명 'D', 연락처 '(전화번호 1 생략)', 'G'라는 제목으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, E 등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20,000원을 지급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.

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,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하여 광고를 하였다.

증거의 요지

1. 피고인들의 법정진술

1. 경찰 압수조서



1. 입건전조사보고서(단속경위에 관한), 입건전조사보고서(현장상황 및 피혐의자 진술에 대한), 입건전조사보고서(녹취록에 대한)

법령의 적용

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

- 피고인들: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, 형법 제30조(성매매알선 영업의 점),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, 형법 제30조(성매매광고의 점), 징역형 선택

1. 경합범가중

- 피고인들: 형법 제37조 전단, 제38조 제1항 제2호, 제50조

1. 사회봉사명령

- 피고인 A: 형법 제62조의2

1. 몰수

- 피고인 B: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

1. 추정

- 피고인 A: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

1. 가납명령

- 피고인 A: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

양형의 이유

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, 성행, 환경, 범행의 동기, 수단과 결과,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.



1. 피고인 A

○ 유리한 정상: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,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.

○ 불리한 정상: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며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,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.

2. 피고인 B

○ 유리한 정상: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,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,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.

○ 불리한 정상: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며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,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.

판사 박경모 _____